

5. 소비자단체 (§28 - §32)

(1)의의

-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(§2 제3호).
- 이들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(§29)

* 특징 : ① 여성단체들이 주도권

- ② 소비자피해 구제 중심(국가권력 또는 시장실패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약화)
- ③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.

(2) 업무(§28)

- ① 소비자정책에 대한 건의
- ② 규격 · 안전성에 대한 조사 등(조사 결과 공표 제2항)
- ③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
- ④ 소비자교육
- ⑤ 소비자피해의 구제

- 자료제출요청권, 정보부정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의무

(3) 등록(§29) 및 취소(§30)

-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(§32)

(4) 자율적 분쟁조정(§31)

-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(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,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)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. 단 전문분쟁기구에 의해 분쟁이 처리되는 경우 예외(금융분쟁, 환경분쟁,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)

- 절차

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등록 소비자단체에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,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.

->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, 공공성과 중립성 지켜야 한다.

->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,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(제2항).

* 문제점

①재정의 취약성(회비의존성), ②지도력의 정체, ③정부기관(한국소비자원)과 활동중복, ④ 소비자 정보제공기능의 부족(정보지의 구독자가 월 1만명 이하), ⑤ 소비자단체의 정체성 문제(여성단체의 출발점 등)

6. 한국소비자원 (§33 - §44)

(1) 조직

- 1987년 ‘한국소비자보호원’으로 출발 -> 2007년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기관명 변경.
- 법인으로 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 설치.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등기(§33 ③), 정관 기재사항(§34)

(2) 구성(§38)

- 원장 · 부원장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.
- 원장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
- 부원장 · 이사 및 소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
- 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
- 임원의 임기는 3년
- 임원의 직무(§39)
- 이사회에의 구성(§40)
- 임원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(§43)

(3) 회계 및 감독

- 회계 : 국가 등의 출연금, 수입금(§41)
- 감독 : 공정위에 의한 감독(§42)

(4) 업무(§35)

- 우선 업무가인 제1호에 소비자 권익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
- > 과거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민원처리기관에서 연구, 조사와 같은 정책기관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목표 반영.
- 시험 · 검사의 의뢰(§36)
- 유사명칭의 사용금지(§37)